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안 건 명	비 고
1533	(1) 총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34	(2) 총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6	(3) 총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7	(4) 총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8	(5) 총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9	(6) 총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40	(7) 총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무 위 원 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1)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3.07.08	2013.07.08	2013.07.15	2013.07.15	허영옥 의원
(2)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07.08	2013.07.08	2013.07.15	2013.07.15	최근배 의원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07.08	2013.07.08	2013.07.15	2013.07.15	총무과장
(4)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07.08	2013.07.08	2013.07.15	2013.07.15	총무과장
(5)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07.08	2013.07.08	2013.07.15	2013.07.15	기획감사과장
(6)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07.08	2013.07.08	2013.07.15	2013.07.15	세정과장
(7)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07.08	2013.07.08	2013.07.15	2013.07.15	주민지원과장

2. 제안설명요지

(1)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질감 회복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안 제3조)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안 제5조)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기능(안 제7조)
-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2)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독립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훈 명예수당 금액 상향 조정(안 제3조제1호)
- 당 초 : 월 5만원 - 변 경 : 월 8만원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국내 숙박비의 지급 단가를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여비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 숙박비 지급단가 인상

- 3급 이상 공무원(별표 1 제1호) : 46,000원 → 실비
- 4급 이하 공무원(별표 1 제2호) : 30,000원 →
특별시·광역시 50,000원, 그 밖의 지역 40,000원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4)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특별휴가 규정을 확대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직기간에 포함하는 임신·출산·자녀 양육 휴직의 상한 규정(안 제18조제2항)
 - 자녀 1명당 최고 1년, 셋째자녀부터는 전부
- 나. 휴직자의 연가일수 산정방법 변경(안 제20조)
 - $(12\text{월} - \text{해당연도 휴직기간(월)}) / \text{해당연도 연가일수} \times 12\text{월}$
⇒ 해당연도 휴직기간(월) / 12월 × 해당연도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다. 공가 대상 추가(안 제22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
 -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협약에 참석할 때
- 라. 특별휴가 확대와 정비
 - 16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자 추가(안 제23조제3항)
 - 임신 11주 이내 5일, 12주~15주 이내 10일
 - 모성보호휴가 신설(안 제23조제5항)
 - 임신 초기(16주 이내) : 5일
 - 적용 시 혼란을 줄 수 있는 조항 정비(안 제23조제8항)
 - 인가된 학습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 모성보호시간 신설(안 제23조제9항)
 -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후 : 1일 2시간
 - 불임치료자 신설(안 제23조제10항)
 - 시술당일 1일(체외수정 시술이면 난자 채취일에 1일 추가)
 - 재난·재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 수행자 신설(안 제23조제11항) : 5일 이내
 -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 신설(안 제23조제12항)
 - 10년마다 5일간

- 경조사(사망) 휴가 확대(별표 3)
 - 본인·배우자의 증조부모와 외증조부모 3일 추가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2 → 3일)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2 → 5일)
본인·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3일)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5)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에 따라 직급·직렬 등 정원을 조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 정원 : 1,293명 (현행과 같음)
 - 일반직 : 1,070명 → 1,076명(+6)
 - 기능직 : 176명 → 170명(△6)
 - 기타 : 47명 (현행과 같음)

(6)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증명 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시민의 무인민원 발급 이용률을 높이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임 규정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정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 신설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 400원/ 필지당 (일반 발급 필지당 800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400원/ 1건 (일반 발급 필지당 800원)

※ 일반발급 대비 수수료 인하

- 상위 법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수수료 신설
 - 내수면어업신고신청 : 1,000원/ 1건
 -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1,000원/ 1건
 -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 : 10,000원/ 1건
 - 낚시터업 변경허가·등록 신청 : 3,000원/ 1건
 -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 : 10,000원/ 1건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반영
 -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수수료
1건 (20,000원 ⇒ 10,000원)
 - 내수면어업면허신청
10,000원⇒ 양식어업·정치망어업(9,000원), 공동어업(7,500원)
 - 내수면어업허가신청 : 1건당(10,000원 ⇒ 5,000원)
 - 내수면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 신청 :
1건당(10,000원 ⇒ 5,000원)
 -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 1건당(3,000원 ⇒ 1,500원)
 -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 1건당(3,000원 ⇒ 1,500원)

(7)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용법 개정 사항(2008. 5. 26 전부개정) 반영
 - 법 제2조제9호 ⇒ 법 제2조제16호(안 제9조)
 - 영 제7조의2 및 영 제13조제1항 ⇒ 영 제11조와 영 제18조 제1항(안 제5조)
 - 영 제16조제5호 ⇒ 영 제25조제5호(안 제21조)
- 나. 상위법에 신설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특례 조항 반영(안 별표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전액 면제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전액 면제
- 다. 상위법에 맞게 공설묘지의 분묘 연장 신청기간 변경(안 제18조)
 -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
- 라. 중복 조항 삭제(안 제28조제3항) * 제27조제4항 내용과 중복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본 제정 조례안은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충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은 2013년 5월말 기준으로 2만 5,210여명에 달하고 있어 국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으로

-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조기 정착과 지원을 위하여 1997년 1월 13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충청북도를 비롯하여 제천시, 증평군, 음성군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현재 139명으로 이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월 5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임.
- 금번 회기 중에는 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우리 위원회에 함께 상정되었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금액에 맞게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1월 9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국내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인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국내 숙박비 지급 단가를 3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당초 “46,000원”에서 “실비”로 하고, 4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당초 “30,000원”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는 “50,000원”, 그 밖의 지역은 “40,000원”으로 지급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인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4)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해 특별휴가 규정을 확대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안 제18조제2항제1호, 안 제22조제5호, 안 제23조제3항, 안 제23조제9항, 안 제23조제10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제1호, 제7조의2제5호, 제7조의3제4항, 제7조의3제5항, 제7조의3제6항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으며,
- 안 제20조 제2항의 휴직자의 연가일수 산정방식 변경과 안 제23조 제8항의 초등학교 이하 자녀학교 행사 시 휴가 규정정비는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23조 제5항(모성보호 휴가 신설), 안 제23조 제11항(포상 특별휴가 신설), 안 제23조 제12항(장기재직자 안식휴가 신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사망 휴가일수 확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1항에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특별휴가의 확대가 자칫하면 일반 시민들로부터 공무원은 열심히 일은 하지 않고 휴가만 간다는 비판의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 복무부서에서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 방침에 따라 2013년도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 6명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의 증감 없이 향후 인력수급과 정원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교부하는 민원서류 중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수수료를 신설하여 현행 민원창구 발급 수수료의 50%로 감면하고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른 낚시업 등록·허가 및 승계 시 수수료와 「내수면어업법」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어업신고 및 변경신고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반영된 수수료를 신설하며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등 9종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임.
- 본 개정 조례안 중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수수료의 감면은 무인발급 이용률을 높이고 민원창구 직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재정수입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사료되며,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사항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일부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령을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7)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항을 정비하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 특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한 자에 대한 공설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였음.
- 또한, 공설묘지의 분묘 연장 신청기간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맞게 “기간만료 30일 전까지”에서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수정하고

- 안 제28조 제3항은 현행 조례 제27조 제4항과 같은 규정으로 되어 있어 삭제하였음.
- 검토결과 금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내용 중 중복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 답변 요지

(1)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 : 충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의 수는?

○답변 : 7월 10일 기준 137명임.

▶질의 : 시에서 지원한 금액은?

○답변 : 2010년도에 지원한 금액은 천육백만원임.

(2)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없음.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우리시에 3급이상 공무원은 몇 분이 있는가?

○답변 : 부시장님 한 분이 있음.

(4)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20년이상 재직시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답변 : 22일 정도 사용할 수 있으며 병가 미사용시 1일이 더 사용할 수 있음.

▶질의 : 초등학교 상당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학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어느 정도인가?

○답변 : 요즘은 많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 공무원들이 휴가를 갔을 경우 업무공백에 대한 대책은?

○답변 :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5)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경우 특정기능을 고려하여 업무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답변 : 운영의 묘를 살려 인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음.

(6)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없음.

(7)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없음.

5. 심사결과

(1)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안 제3조 중 “추진하여야 한다.” 를 “추진할 수 있다” 로 수정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책을 우리시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

(2)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붙임

○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시책을 <u>추진하여야 한다.</u></p> <p>1. ~ 4. (생략)</p>	<p>제3조(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 ----- ----- ----- ----- -----</p> <p><u>추진할 수 있다.</u></p> <p>1. ~ 4. (제정안과 같음)</p>